

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04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11. 19
제출자 : 안산시장

개정이유

- 「지방세기본법」이 제정(법률 제10219호, 2010. 3. 31. 제정, 2011. 1. 1. 시행)됨에 따라 현행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새롭게 설치되는 「지방세심의위원회」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, 기존 안산시세입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관련조항을 삭제함. (안 제7조)

개정조례안 : 붙임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- 지방세기본법 제141조(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)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0. 10. 16. ~ 2010. 11. 4.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

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급에 관하여 필요한” 을 “지급에 필요한” 으로 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정의는” 을 “뜻은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이라 함은” 을 “이란” 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의하여” 를 “따라” 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6조에 따라” 로 하고 “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산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” 를 “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른 안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1항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9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1항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 을 “시행에 필요한” 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소관 실·과		세 정 과
입 안 자	실·과장	세정과장
	직위·성명	박 용 덕
	담당·팀장	세정담당
	직위·성명	배 순 철
	담당자	신 운 호
	성명·전화	(행정 2198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지급에 필요한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2조(정의) 뜻은 1.이란 2.이란 3.이란 4.이란 5. ~ 6. (생략) 가. ~ 다. (생략)
제6조(포상금 지급신청) ① ~ ② (생략) ③ 제2항에 의하여 포상금 신청을 받은 구청장 및 실·과·소·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6조(포상금 지급신청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따라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포상금 지급)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산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포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7조(포상금 지급) ①제6조에 따라.....안산시 시세기본조례 제47조에 따른 안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..... ②제1항에 따라.....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9조(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)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</p> <p>2. 지방세제도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식견을 갖춘 민간인</p> <p>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제3조의 규정에 정한 지급대상</p> <p>2. 제4조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준</p> <p>3. 제5조의 규정에 정한 지급한도</p> <p>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.</p> <p>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p>	<p><삭제></p>
<p>제9조의2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.</p>	<p><삭제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수당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 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〈삭제〉</p>
<p>제11조(환수) ① ~ ② (생략) <u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환수할</u>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 지가 도착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 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(환수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제1항에 따라</u></p>
<p>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3조(시행규칙) <u>시행에</u> <u>필요한</u></p>